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,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
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저출
생 문제가 심각해,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
지원기준을 2자녀로 확대·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를 반영
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조례들이 더러 있어, 몇몇 일부개정조례안과
함께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-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서서 정부정책과 함께 발맞추어 나감으로써 서울시민
모두가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 나서는 데 힘을
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

-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,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30% 감면대상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(제34조 제 1항 제9호)하여 혜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.

-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,
개정안의 취지를 살피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
- 감사합니다.